

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53(운동용안전모)안전기준개정고시

국가기술표준원(2025. 8. 1.)



국가기술표준원은 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」제15조제3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(운동용 안전모)의 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다.

1. 개정 취지

- 해외기준을 국내 안전기준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해석의 오류 등을 정비

2. 개정 내용

- 총 4부*로 구성된 '운동용 안전모' 각부의 용어를 통일

*1부: 자전거·롤러스포츠용, 2부: 등산용, 3부: 스키용, 4부: 야구용(타자용, 포수용)

- 오기된 모델 구분을 해외기준(EN)에 맞춰 정정*

*EN1077 A타입 → 부속서53(운동용 안전모) B타입, EN1077 B타입 → 부속서53 A타입으로 잘못 해석, EN1077에 맞춰 A타입과 B타입의 모델 구분을 일치화

- '운동용 안전모' 머리모형 규격의 현행화

- 표시사항에 머리치수 표기

3. 부칙

- 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 세부내용

-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(<https://www.kats.go.kr/> → 소식 → 고시·공고 )에서 확인